

공정거래를 위한 대표이사 메시지

뉴스킨 코리아 가족 여러분,

뉴스킨 코리아는 혁신적인 제품과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을 통해 최고의 글로벌 뷰티 및 웰니스 기업으로의 도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힘"을 실현하고 위와 같은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준법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저희 뉴스킨 코리아는 공정문화 확립에 선제적·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며,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여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은 CP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뉴스킨 코리아의 공정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을 숙지·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내 위반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회사의 내부 제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임명하는 자율준수관리자(박세연 이사)는 CP의 총괄 책임자로서 대내외적으로 업무상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CP활동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뉴스킨 코리아는 CP 운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공정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임직원에게는 포상을, 공정문화를 해치는 법 위반 행위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뉴스킨 코리아는 공정거래 문화 조성 and 준법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and 선의의 힘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and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킨코리아 대표이사
조지훈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방침

1. 서문(Introduction)

우리 회사는 윤리적 행위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는 훌륭한 비즈니스 관행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약한다.

- 모든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규,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관행 등을 준수한다.
- 윤리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현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모든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수용하고, 자기 업무 분야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배분한다.
- 전사적인 공정거래 문화 인식 수준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전 법규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법적 및 윤리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개발 및 운영한다.
-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2. 적용범위(Scope)

본 방침은 우리 회사 및 계열회사 전체의 모든 활동 및 영역에 적용된다.

또한 회사에 소속된 모든 관리자, 근로자, 계약자, 아웃소싱업체, 대리인, 공급업자는 항상 제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한다.

3. 공정경쟁을 위한 우리의 원칙(Principle)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있어 허용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이다.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한 조그만한 의문이나 우려가 있는 당사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 행위 금지

제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 조건 등을 경쟁회사와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아야 하며,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피하여야 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i) 이의를 제기하고, (ii)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퇴장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는 경쟁사와 교환해서는 아니 되며(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 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경쟁사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생산량, 마케팅 전략 등이 언급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입찰담합 금지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담합은

부당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그 폐해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가격담합, 시장분할 담합 등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일종으로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 또는 철회 여부, 입찰 가격 등 입찰 제안 조건은 경쟁사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입찰 가격 또는 조건, 입찰 참가 또는 철회, 그리고 지역적 시장 배분과 관련하여 절대로 경쟁사와 합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된다.

(3)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

원재료, 설비, 자재구매, 제조 등의 하도급업체와는 좋은 파트너로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금 인하 강요나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협력사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정상적인 상관계수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으로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 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계약,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또는 경쟁사업자배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단순한 요청이 거래상 지위와 결부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강요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여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력사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방침의 위반의 결과(Outcome)

본 방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당사의 행동강령, 고용계약 등의 위반으로 해고나 징계사유가 되며, 비즈니스 파트너사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업관계 종료의 사유가 된다.

특히 임직원은 경쟁법 위반시 벌금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